

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998. 11. 4

관광건설위원장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8년 10월 27일, 충청북도지사

나. 회부일자 : 1998년 10월 27일

다. 상정일자 : 제154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 ('98. 11. 4) 상정
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답변 및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건설교통국장 김 종 운)

가. 제안이유

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과징금의 징수·독촉 및 사무의 위임에 관한 내용
- 운영기금의 적립 및 운영에 관한 내용
- 비수익 노선의 선정 및 보상방법 등 명시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신 익 수)

충청북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징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(안)을 검토한 바,

이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전면 개정·시행됨에 따라 모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

그 주요 골자에 있어서는,

첫째, 과징금의 독촉 및 부과·징수 사무의 위임에 관한 내용

둘째, 운영기금의 조성, 적립 및 관리에 관한 내용

셋째, 수익성이 없는 노선 선정 및 본 노선 운행에 따른 결손발생시 보상방법 등을 명시한 것으로 승인하여 준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

안 제6조 제1항, 제2항 및 안 제7조 제1항에 표기된 운행결손과 운송결손은 구분에 필요성이 없을뿐더러 조례 해석에 혼동을 줄 여지가 있으므로 운송결손으로 표기된 부분을 운행결손으로 수정 용어를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답변 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

과징금의 납부를 독촉함에 있어 납부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또한 모범 즉,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사용한 용어와 통일을 기하기 위함.

나. 수정 주요 골자

안 제2조중 “10일 이내의”를 “10일 이내로”로
안 제7조 제2항중 “운수사업자가”를 “운송사업자가”로 함.

7. 심 사 결 과 : 원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 (참석 7명, 찬성 7명)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붙 임 : 가.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
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

나.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
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다. 대비표